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10월 23일, 노종면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10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4. 12. 23.)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2025. 9. 24.)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9. 25.)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국회의원 노종면)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 등 전기자동차 배터리(구동 축전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기자동차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날로 증대되면서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이라는 정부 시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 제작자나 판매자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사유로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제작·판매자등으로 하여금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이용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곽현준)

가.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 주요 정보 공개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의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기차 화재사고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자동차 배터리(구동축전지) 안전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전기차 화재사고 현황 >

구 분	2021	2022	2023	계(건)
운행중	12	22	34	68
주차중	6	9	21	36
충전중	4	9	13	26
기타	2	3	4	9
합계	24	43	72	139

자료 : 소방청

이렇듯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증폭되는 상황임에도 자동차제조사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개정안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주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전기차 소유자 및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전기차의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배터리 제조사 등의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구동축 전지의 용량, 정격전압 및 최고출력, 구동축전지 셀의 제조사, 형태 및 주요 원료 등의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9. 10 ~ 10. 21) 및 개정절차를 이미 진행하고 있어 개정실익이 적은 측면이 있음.

다음으로, 배터리의 원산지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11. 11 ~ 12. 13)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성능시험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핵심장치등의 제원표(제25호의2서식)에 배터리의 생산지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소비자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정보인데,

배터리 원산지 정보의 소비자 공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시 동일한 재료 및 제작 공정으로 제작되었지만 원산지만 다른 경우 다른 배터리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는바, 개정안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측면과 자료 제공의 실익, 자료제공시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과전류 차단 방식, 미발화 또는 미폭발 조건 정보와 관련하여 현행 자동차규칙 상 배터리 과전류 차단 기능, 미발화 및 미폭발하여야 하는 최소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과전류 차단방식은 소비자 공개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음.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33호) 별표(1-48. 구동축전지 안전성시험)에서는 진동, 열충격,

침수, 연소, 과충전, 과방전, 과열방지 등 12개 시험항목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여, 과열, 전해질 누출, 벤팅, 발화 및 폭발이 없을 것을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구동축전지의 주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상 사고기록장치 미장착 또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인증을 받은 자 등에 대한 처벌과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른 처벌 수준은 범죄행위의 중대성, 벌칙조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정보 공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로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복기왕)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